

# 사단법인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정관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(이하 "학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Ultrapure Water and Desalination(KSUWD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학회는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산·학·연·관이 연계하여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에 관한 기술발전과 정책 및 제도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법인격)** 학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학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
2.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
3.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
4.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관련 기술교육 및 연수
5. 국내외 관련 학회, 기관과의 교류·협력 및 정보 교환
6.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관련 기술개발 장려를 위한 학술활동 및 홍보
7. 기타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소재지)**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,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## 제2장 회 원

**제6조(회원의 자격)** 학회의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은 개인회원, 기업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개인회원은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2. 기업회원은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사, 기업 또는 기타 영리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.
3. 명예회원은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에 한하며, 명예회원은 제7호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
1.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
2. 학회의 인적·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
3. 학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
4.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
5. 학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6.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활동에 협조할 의무
7. 회비를 납부할 의무

#### **제8조(회원의 가입, 자격정지, 제명 및 탈퇴)**

-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에 비치된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② 이사회가 정한 회비의 납부를 1년 이상 연체한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 된다. 다만, 자격정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- ③ 학회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- ④ 회원은 학회에 비치된 양식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즉시 탈퇴할 수 있다.
- ⑤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회비 등은 환급하지 아니 한다.

### 제3장 임 원

**제9조(임원)** ①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5인 이내
3. 이사 50인 이내(단, 회장과 부회장은 포함하지 않음)
4. 감사 2인 이내

② 이사는 총무이사, 재무이사, 학술이사 및 홍보이사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10조(임원의 선임)**

-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④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환경부에 보고한다.

**제11조(임원의 임기)**
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0조에 따라 선임된 후 처음 도래하는 1월 1일부터 개시한다. 다만,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자가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,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에 개시하여 그 후 2년의 기간 내에 종료하는 마지막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 또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법령이 정한 사유로 임원 취임 승낙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**제14조(임원의 직무)**

-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1. 학회의 회계 및 재산 상황 감사
 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
 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, 환경부장관에게 보고
 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  5.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

**제15조(고문)**

- ① 학회에 5명 이내의 고문을 둔다.
- ② 고문은 학회의 전직 회장들과, 학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초순수·해수담수 및 이를 위한 물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.
- ③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여 학회의 운영에 협조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## 제4장 총 회

**제16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### 제17조(총회의 종류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소집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.
  1.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
  3. 감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4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18조(총회의 소집)**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각 회원 및 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
2. 해산 및 정관변경의 승인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
5.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### 제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의 의결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총회의 의장 및 회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### 제21조(총회의 회의록)

-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자 대표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이 사 회

**제22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### 제23조(이사회 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소집 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정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.
  1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감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
  3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**제24조(이사회 소집)**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를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소집 절차의 생략 또는 소집 기간의 단축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5조(이사회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추천
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 할 사항
3.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4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6.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7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8. 지부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9. 학회 운영경비 조달에 관한 사항
10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

#### **제26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**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#### **제27조(이사회의 회의록)**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은 회의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# **제6장 분과위원회, 사무국**

#### **제28조(분과위원회)**

- ① 학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.

#### **제29조(사무국)**

- ① 학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,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④ 사무국의 직제, 인사관리, 업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한다.

## 제7장 재산 및 회계

**제30조(회계연도)**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1조(재정)**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
2.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
3. 자산에서 생긴 과실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실시로 생긴 수입
4.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, 장려금 및 기부금
5. 기타 수입

**제32조(회비)**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,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, 회비의 금액 및 납부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**제33조(특별회계)**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수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34조(예산)**

-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35조(결산)**

-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단, 결산서류는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36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**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### 제37조(재산의 구분)

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
1.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### 제38조(재산의 처분 등)

① 학회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,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8장 보 칙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 제40조(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)

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 결의를 한 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**제41조(시행세칙)**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42조(준용규정)** 본 정관이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및 「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**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